

● 제321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9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3. 12. 19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김영옥 의원 발의 】

의안번호 1387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김영옥 의원(찬성 10명)
- 나. 제안일 : 2023. 10. 16.
- 다. 회부일 : 2023. 10. 23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2022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.59명에 그치는 등 심화되는 저출생 상황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출산, 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, 조례마다 관련 용어 정의가 상이하고 다른 조례와의 적용 우선순위가 불분명하여 혼선이 초래될 수 있음.
- 이에 “다자녀 가족” 등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, 관련 조례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저출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“다자녀 가족”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(다만 자녀 중 한 명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)로 정의함 (안 제2조제2호).
-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(안 제2조의2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

다. 입법예고 (2023.10.26.~10.30.) 결과 : 의견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“다자녀 가족” 용어 정비를 통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출산 및 양육 지원 관련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함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다자녀 가족 및 다둥이 행복카드 정의규정 변경 (안 제2조제 2호 및 제4호)

- 안 제2조제2호는 다자녀 가족 정의 규정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 중에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다자녀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“ <u>다자녀가족</u> ”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<u>가족</u> 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“ <u>다자녀 가족</u> ”이란 ----- ----- ----- <u>가족(다만 자녀 중</u>

<p>3. (생략)</p> <p>4. "다둥이 행복카드"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<u>다자녀가족</u>(다만, 막내가 18세 이하)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.</p> <p>5. ~ 8. (생략)</p>	<p><u>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</u>)을 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<u>다자녀</u> <u>가족</u>----- ----- -.</p> <p>5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

- 현행 조례에서는 다둥이 행복카드 정의(동 조례 제2조제4호)에만 다자녀 가족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, 다자녀 가족 정의(동 조례 제2조제2호)에는 자녀 연령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.
- 따라서 안 제2조제4호는 ‘다자녀 가족’ 정의 규정에 자녀 연령 기준을 포함하여 동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자녀 가족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으로써 타당하다고 보여짐.
- 다만 다자녀 가족 관련해 법률상 정의 규정은 별도 없지만 「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1)에 따라 다자녀 가족을 정의하고 있어 동 조례에서 다자녀가족을 별도 정

1) 「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다자녀 가족"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.

의하는 것의 입법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.

□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2조의2 신설)

- 안 제2조의2는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, 이 조례를 따른다고 명시하기 위함임.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
<신설>	<u>제2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

- 동 조례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제1항2)에 따라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시장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출산 및 양육 관련 정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함으로써 기본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.
- 따라서 동 조례는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해 기본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별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, 별도

2)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동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짐.

- 또한 출산 및 양육 관련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바,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동 조례와의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동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다자녀 가족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양육하는 가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자녀 연령에 대한 기준은 없어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다자녀 가족 용어 정비를 통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으로써 입법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임.
- 또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출산 및 양육 관련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와의 적용 우선순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짐.